

9 규칙부 보고

제102회기 규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신현철
서 기 박창식

1. 조 직

- 1) 임 원 : 부장 신현철, 서기 박창식, 회계 이해중, 총무 안홍대
- 2) 실행위원 : 박대연 한근수 김옥경 이운남 박정권 이선일 석광희 조병수 이수덕 최상호 최윤길 장영일 박병규 박호영 박성철 유병오 백용구 조문상 신수한
- 3) 위 원 : 이정수 임상철 박종중 정승창 임영섭 정명선 이풍희 송태기 조동욱 황인순 김대은 박종대 임장빈 김철환 방운달 김중석 박광재 장원수 박종안 최병도 이승원 김학규 김봉기 문상무 김광혁 백성권 임재호 정희진 최득신 김영곤 허정인 공학섭 박창조 강신혁 송종완 김철원 전의진 광인식 조동원 이영화 김종희 김종출 고봉환 이승범 김석중 김정열 강운철 홍성진 박영철 신성태 김종인 김재호 노경수 박영석 유광철 이상의 김재영 이기혁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9. 19(화) 11:00

☞ 장 소 : 기쁨의교회당

☞ 결의사항

- ① 부장 신현철 목사, 서기 박창식 목사, 회계 이해중 장로, 총무 안홍대 목사로 조직키로 하다.
- ② 소위원회와 실행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③ 기타 안건 심의는 규칙부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2) 실행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9. 21(목) 14:00

☞ 장 소 : 기쁨의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규칙부 심의안대로 상정키로 하다.

총회규칙 원안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심의내용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총회규칙 원안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심의내용
<p>제9조(상비부)</p> <p>2. 선거 방법과 임기</p> <p>7)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p> <p>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을 추천을 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 받은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p> <p>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p>	<p>제9조(상비부)</p> <p>2. 선거 방법과 임기</p> <p>7)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6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 위 6개의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p> <p>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단, 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p>	<p>수정</p> <p>원안대로</p>
<p>제11조(위원회)</p> <p>4. 선거관리위원회</p> <p>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위원회)</p> <p>4. 선거관리위원회</p> <p>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추천 받은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p>	<p>원안대로</p>
<p>제12조(총무)</p> <p>2. 선정</p> <p>1)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및 선거를 진행하되 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정한다.</p>	<p>제12조(총무)</p> <p>2. 선정</p> <p>1)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진행 등은 총회 임원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투표는 총회에서 입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종다수로써 선정한다.</p>	<p>심의안대로</p>
<p>심의안</p>	<p>제12조(총무)</p> <p>2. 선정</p> <p>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하여 진행하되, 투표는 총회에서 입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p>	

②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니 3조와 16조는 수정안대로 받고, 31조는 기각하는 심

의안을 보고기로 하다

- ③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니 심의시간이 부족하므로 규정 개정안은 임시 채용하고 회기 내에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발효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7. 18(목)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규칙부 사업보고 하니 총회 수임사항과 규칙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 ㉠ 총회 수임 사항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
 - 총회본부 업무규정 심의
 - ㉡ 규칙부 사업
 - 디지털 규정집 제작
- ② 제103회 규칙부 보고시 아래와 같이 청원하기로 하다.
- ㉠ 총회 규칙 개정(안) #첨부1.
 - 제1장 제3조 / 개정
 - 제3장 제9조 2항 7),13 / 개정
 - 제3장 제11조 1항 1) / 개정
 - 제4장 제13조 1항 / 개정
 - 제9장 제30조 / 신설
 - 제9장 제31조 / 신설
 - 제9장 제33조 / 신설
 - ㉡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항 10)」은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자로 한다”와 실제적 군목에 대한 나이가 달라 사실상 위헌이기에 제98회 총회 결의와 현행 총회 규칙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단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과 헌법 개정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헌법을 잠재하고 현행 규칙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결의 청원하기로 하다.
 - ㉢ 총회를 비롯한 각 치리회의 회의절차에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므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을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만들고,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도록 보고기로 하다.
 - ㉣ 총회 디지털 규정집 제작을 허락받았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완결하지 못함이 있어 제103회 총회에서 디지털 규정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관리는 총회본부 전산관리팀에서 담당하여 관리토록하고, 규정내용에 관하여는 규칙부가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 총회가 질서있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 총대들의 총회 규칙에 대한 이해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규칙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 제103회기 사업 진행(회의비, 디지털 규정집 관리비, 소위원회 연구비, 규칙세미나)을 위하여 5천만원 청원하기로 하다.



3) 소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9. 21(목) 10:00

☞ 장 소 : 기쁨의교회당

☞ 결의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규칙부 심의안대로 상정기로 하다.

총회규칙 원안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심의내용
<p>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9조(상비부) 2. 선거 방법과 임기 7)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p> <p>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u>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을 추천을 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 받은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u> 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p>	<p>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9조(상비부) 2. 선거 방법과 임기 7)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6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 <u>위 6개의 어느 부서에도</u>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p> <p>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u>단, 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u></p>	<p>수정</p> <p>원안대로</p>
<p>제11조(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u>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 (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u></p>	<p>제11조(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u>(현장에서 추천 받은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u></p>	<p>원안대로</p>
<p>제12조(총무) 2. 선정 1)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u>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및 선거를 진행하되</u> 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정한다.</p>	<p>제12조(총무) 2. 선정 1)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u>선거진행 등은 총회 임원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투표는 총회에서 입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종다수로써</u></p>	<p>심의안대로</p>

총회규칙 원안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심의내용
		선정한다.	
심 의 안	제12조(총무) 2. 선정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하여 진행하되, 투표는 총회에서 입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 ②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니 심의시간이 부족하므로 규정 개정안은 임시채용하고 회기내에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③ 교회자립개발원 이사회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니 심의시간이 부족하므로 정관 개정안은 임시채용하고 회기 내에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발효 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④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2017년 9월 21일 오후2시 기쁨의교회 4층 회의실에서 회집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9. 21(목) 22:00

☞ 장 소 : 기쁨의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 직선제 선거결의에 따른 선거방법 관련 규칙 수정안을 보고기로 하다.

원 안	수정안
제6조(선거방법) 1. 총회 선거규정에 의한다. 2. 총회임원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3. 이상 모든 임원은 임원직에서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각 상비부장, 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제6조(선거방법) 1. 2. 총회임원선출은 직선제로 한다. 3. 4. 각 상비부장, 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7. 9. 22(금) 09:00

☞ 장 소 : 기쁨의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 직선제 선거결의에 따른 선거방법 관련 규칙 수정을 하다.

원 안	수정안
제6조(선거방법) 1. 총회 선거규정에 의한다.	제6조(선거방법) 1.



원 안	수정안
2. 총회임원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2. 총회임원선출은 직선제로 한다.
3. 이상 모든 임원은 임원직에서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3.
4. 각 상비부장, 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4. 각 상비부장, 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 2.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심의시간이 부족하므로 규정 개정안은 임시채용하고 회기 내에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3.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니 3조와 16조는 수정안대로 받고, 31조는 기각하는 심의안을 보고기로 하다.

(3) 제4차 회의

☪ 일 시 : 2017. 10. 31(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7. 12. 20(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회에서 통지해온 제102회 총회 결의사항(목사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동시 출마 여부에 관한 현의안) 건은
 - ㉠ '선거규정 제14조 4항'에 공천위원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옳다고 본다
 - ㉡ 명문화의 관한 건은 선거규정 개정 사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옳다.
 - ㉢ 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케 하기로 결의하다.
- ② 제102회 총회 규칙부 청원사항인 총회본부 업무규정 심의 건은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규칙부가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칙부로 규정을 보내주도록 총회 총무에게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하다.
- ③ 제102회 총회 규칙부 청원사항인 디지털 규정집 발행의 건은 부장 신현철 목사에게 위임하여 계획하여 보고 후 처리기로 하다.
- ④ 총회임원회에서 이첩해온 헌법 권징조례7장 54조에 대한 바른해석과 바른적용에 대한 문의 건은 헌법해석은 규칙부 소관이 아니므로 총회 임원회에 다시 송부하기로 결의하다.
- 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정관 심의 건은
 - ㉠ 제1조(명칭) 은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2항 7호와 상충되므로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총회규칙 개정안을 상정케 하도록 결의하다.
 - ㉡ 규정 제5장 제12조 '총회예산 범위 내에서'를 '총회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로 하기로 하다.

㉔ 제5장 13조 1,2항에서 “동 규정”을 “본 규정”으로 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8. 1. 18(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은 심의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제1장 총칙</p> <p>제2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거방법)와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8조(상비부) 제2항(선거 방법과 임기)에 의하여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2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거방법)와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8조(상비부) 제2항(선거 방법과 임기)에 의하여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개정안대로
<p>제2장 조직</p> <p>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총회규칙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10조(위원회) 3항(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총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p>	<p>제2장 조직</p> <p>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총회규칙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11조(위원회) 4항(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며 총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p>		개정안대로
<p>제4조 (선임):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p> <p>1. 위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 총 15인으로 하며 3개 지역 구도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p>	<p>제4조 (선임):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p> <p>1. 위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 총 15인으로 하며 3개 지역 구도별로 균등하게 배정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p>	<p>제4조 (선임):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p> <p>1. 위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 총 15인으로 하며 3개 지역 구도별로 균등하게 배정한다.</p>	심의안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3항에 선출방법이 있으므로 1항은 구성에 따른 배정만 명시함.	
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u>총회임원회에서 선정한다.</u>	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u>위원회에서 입후보를 받아 총회 현장에서 그 지역 총대들이 투표로 선출한다.</u>		개정안대로
5. 각 위원은 총대경력 7년 이상, 장립한 후 15년 이상 되는 자로 한다.		(5항 삭제) ※①선거규정 제3장 제12조 6항에 선관위원 자격(총대경력 6회, 장립15년, 무흠10년) 명시 되어 중복됨 ②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4항 선관위원 자격요건(총대경력 6회)과 맞지 않음	심의안대로
제5조 (임기 및 보선) 1.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하고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u>	제5조 (임기 및 보선과 사임 등) 1.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 <u>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호 4)</u> "를 원용한다.		개정안대로
2. 위원이 총회임원에 입후보할 시 <u>4월 30일</u> 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총회임원에 입후보할 시 <u>6월 30일</u> 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안대로
3. 위원이 총회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시 <u>5월 31일</u> 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총회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시 <u>6월 30일</u> 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안대로
4. 결원된 위원은 14일 이내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한다.	4. 결원된 위원은 14일 이내 <u>총회임원회에서 해당지역구도와 해당직분자 중에서</u> 보선한다.	4. 결원된 위원은 14일 이내 <u>총회임원회가 해당지역구도의 해당직분자 중에서</u> 보선한다.	심의안대로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0조 (공통사항):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의 입후보 자격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0조 (공통사항):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u>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u> 의 입후보 자격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3. <u>노회가 21당회 미달할 경우에는 선출직에는 출마할 수 없다.</u>		개정안대로
제12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의 입후보 자격) 1. 상비부장 ①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까지 <u>무흠 만 5년 이상 된 자.</u>	제12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u>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u> 의 입후보 자격) 1. 상비부장 ①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까지 <u>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 자) 만 7년</u> 이상 된 자.		개정안대로
② <u>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행정,감사(7개)</u> 부장은 장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조직교회 시무자이며 총대경력 <u>5회</u> 이상인 자로 한다.	② <u>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u> 부장은 장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조직교회 시무자이며 총대경력 <u>7회</u> 이상인 자로 한다.	※총대경력이 7회 이상이면 사실상 9년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대 참여권한이 많이 제한됨	현행대로
3. 기관장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u>5회</u> 이상인 자	3. 기관장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u>7회</u> 이상인 자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선거규정이 5회로 개정된 후 시행도 못해보았고, 기독교신문 이사장•사장 외에 타기관장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음	현행대로
4)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u>5회</u> 이상인자	4)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u>7회</u> 이상인자		현행대로
	5) <u>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u> ① <u>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된 자</u> ② <u>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된 자</u> ③ <u>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인 자</u>	5)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된 자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된 자 ③ 등록일까지 <u>총대경력 5회</u> 이상인 자	심의안대로
	6) <u>재판국원</u> ① <u>목사: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15년 이상된 자</u> <u>장로: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15년 이상된 시무장로</u>		개정안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된 자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인 자		
	7) 선거관리위원 ① 목사: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만 15년 이상된 자 장로: 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 15년 이상된 시무장로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된 자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회 이상인 자 ④ 위원이 당연직인 경우,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그 자격이 확정된 자	7) 선거관리위원 ① 목사: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만 15년 이상된 자 장로: 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 15년 이상된 시무장로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된 자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회 이상인 자 ④ (삭제) ※당연직 위원은 직전 임원으로써 규칙과 선거규정에 상치됨	심의안대로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1. 총회 임원 4)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받아 봄 정기노회 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등)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등) 1. 총회 임원 4)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받아 당해 연도 7월 임시노회 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대구중노회 현의안에 대한 총회 결의에 따른 심의안	심의안대로
5)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입후보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	5)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이 총회임원과 총무 입후보 시는 등록접수 1일 전 까지 사퇴하여 그 접수증을 입후보 등록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대로
	6) 위 5)의 사퇴한 접수증을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첨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후보 등록은 무효처리하되,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대로
3. 기관장: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단 기관장이 총회임원 입후보 시 등록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3. 기관장 중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삭제) ※선거규정 제4장제13조1항5)과 중복 됨		개정안대로
제14조 (입후보 등록제한) 3. 임기 내 정년 이 해당되는 자	제14조 (입후보 등록제한) 3. 임기 내 정년 이 에 해당되는 자		개정안대로
5.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	5.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민, 형사(소장,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한 자.	5. 교회, 노회,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따라 가처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소송(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총회를 상대로 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포함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진행 중인 자 ※개정안을 실질적 적용할 수 있는 문안으로 변경	심의안대로
제15조 (등록공고): 위원회는 매년 3, 4월에 한 회기 내에 실시할 모든 선거의 등록공고 사항을 총회 기관지에 2회에 걸쳐 일괄 공고한다.	제15조 (등록공고): 위원회는 매년 2월 초순경과 3월 초순경(2회)에 걸쳐 한 회기 내에 실시할 모든 선거의 등록공고 사항을 총회 기관지에 일괄 공고한다.	제15조 (등록공고): 위원회는 매년 2월 중과 3월 중(2회)에 걸쳐 한 회기 내에 실시할 모든 선거의 등록공고 사항을 총회 기관지에 일괄 공고한다. ※초순경이라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선관위에서 요청	심의안대로
제16조 (등록기간, 기호선정) 1. 총회임원: 매년 6월 1일 9시부터 6월 10일 17시까지 등록한다.	제16조 (등록기간, 기호선정) 1. 총회임원: 매년 7월 둘째 주 일 후 월요일 9시부터 둘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개정안대로
2.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매	2.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재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년 7월 1일 9시부터 7월 10일 17시까지 등록한다.</p>	<p>판국원, 선거관리위원 : 매년 7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셋째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p>		대로
<p>3. 기관장: 해당 년도 7월 1일 9시부터 7월 10일 17시까지 등록한다.</p>	<p>3. 기관장: 해당 년도 7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셋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p>		개정안대로
<p>5. 후보자 기호순서는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 본인 추천으로 선정한다.</p>	<p>5. 후보자 기호순서는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 본인 추천으로 선정한다. 단, 후보자 본인이 추천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참석자의 기호추천 다음번호를 부여하되, 장립순, 나이 순으로 한다.</p>		개정안대로
<p>제17조 (등록서류) 1. 총회임원 8)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폐기)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11) 혼인증명서 1부 13) 입후보자 소견서(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1부</p>	<p>제17조 (등록서류) 1. 총회임원 8)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1) 혼인관계증명서 1부 13) 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2포인트, 자간125%, 행간 160% 이내) 1부</p>	<p>제17조 (등록서류) 1. 총회임원 8)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 면접시 지참</u> ※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1) 혼인관계증명서 1부 13) 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2포인트, 자간125%, 행간 160% 이내) 1부 16) 부임원에서 정임원 등록시 위 1), 3), 6), 13), 15) 서류만 제출한다. ※정임원 서류간소화(등록원서, 노회추천서, 등록금 납입영수증, 세례교인헌금 영수증) 선관위 요청</p>	심의안대로
<p>2. 상비부장 7)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폐기)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10) 혼인증명서 1부</p>	<p>2. 상비부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p>	<p>2. 상비부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 면접시 지참</u> ※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p>	심의안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10) <u>혼인관계증명서</u> 1부	9) <u>가족관계증명서(상세)</u> 1부 10) <u>혼인관계증명서</u> 1부	
3. 공천위원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폐기)</u> 9) <u>가족관계증명서</u> 1부 10) <u>혼인증명서</u> 1부	3. 공천위원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 9) <u>가족관계증명서(상세)</u> 1부 10) <u>혼인관계증명서</u> 1부	3. 공천위원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 면접시 지참</u> ※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 9) <u>가족관계증명서(상세)</u> 1부 10) <u>혼인관계증명서</u> 1부	심의안 대로
4. 기관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폐기)</u> 9) <u>가족관계증명서</u> 1부 10) <u>혼인증명서</u> 1부	4. 기관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 9) <u>가족관계증명서(상세)</u> 1부 10) <u>혼인관계증명서</u> 1부	4. 기관장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 면접시 지참</u> ※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 9) <u>가족관계증명서(상세)</u> 1부 10) <u>혼인관계증명서</u> 1부	심의안 대로
	5. 재판국원 1) <u>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u> 2) <u>이력서 1부</u> 3) <u>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u> 4) <u>장립증명서 각 1부</u> 5) <u>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u> 6) <u>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u>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 8) <u>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u> 9) <u>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u> 10) <u>혼인관계증명서 1부</u> 11) <u>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u>	5. 재판국원 1) <u>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u> 2) <u>이력서 1부</u> 3) <u>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u> 4) <u>장립증명서 각 1부</u> (5)호 삭제 ※등록금 삭제 심의안에 맞춰 삭제 5) <u>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u>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 면접시 지참</u> ※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 7) <u>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u> 8) <u>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u> 9) <u>혼인관계증명서 1부</u>	심의안 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u>12) 위임증명서 1부</u> <u>1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u> <u>14) 7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총회) 1부</u></p>	<p>10)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노회) 1부 11) 위임증명서 1부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13) 7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총회) 1부</p>	
	<p>6. 선거관리위원회(선출직) <u>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u> <u>2) 이력서 1부</u> <u>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u> <u>4) 장립증명서 각 1부</u> <u>5)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u> <u>6)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u> <u>7)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u> <u>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 <u>8)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u> <u>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u> <u>10) 혼인관계증명서 1부</u> <u>11)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노회) 1부</u> <u>12) 위임증명서 1부</u> <u>1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u></p>	<p>6. 선거관리위원회(선출직)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2) 이력서 1부 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4) 장립증명서 각 1부 (5)호 삭제)※등록금 삭제 심의안에 맞춰 삭제 5)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7)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u> 면접시 지참 ※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노회) 1부 11) 위임증명서 1부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p>	<p>심의안대로</p>
		<p>7. 선거관리위원회(당연직) <u>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u> <u>2)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u> <u>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u>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p>	<p>심의안대로</p>

현 행	개 정 안	심 의 안	비 고
	<p>7. 총회 총무</p> <p>1) <u>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u></p> <p>2) <u>이력서 1부</u></p> <p>3) <u>소속노회 추천서 1부</u></p> <p>4) <u>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u></p> <p>5) <u>장립증명서 1부</u></p> <p>6) <u>발전기금 납입 영수증</u></p> <p>7) <u>무흠증명서(노회) 1부</u></p> <p>8) <u>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일부(경찰서) 1부(심사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u></p> <p>9) <u>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u></p> <p>10) <u>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u></p> <p>11) <u>혼인관계증명서 1부</u></p> <p>12) <u>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u></p> <p>13) <u>입후보자 소견서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2포인트, 자간125%, 행간 160% 이내)1부</u></p> <p>14) <u>위임증명서 1부</u></p>	<p>8. 총회 총무</p> <p>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p> <p>2) 이력서 1부</p> <p>3) 소속노회 추천서 1부</p> <p>4)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p> <p>5) 장립증명서 1부</p> <p>(6)호 삭제※등록금 삭제</p> <p>심의안에 맞춰 삭제</p> <p>6) 무흠증명서(노회) 1부</p> <p>7)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전체(경찰서) 1부 면접시 지참</p> <p>※제출시 형법에 위반되기에 선관위에서 요청</p> <p>8)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p> <p>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p> <p>10) 혼인관계증명서 1부</p> <p>11)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p> <p>12) 입후보자 소견서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2포인트, 자간125%, 행간 160% 이내)1부</p> <p>13) 위임증명서 1부</p>	<p>심의안 대로</p>
	<p>8. 모든 입후보자 소속노회의 당해 연도의 봄 정기회와 임시회의의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p> <p>2. 모든 입후보자 심의 중 필요시 소속노회의 당해 연도의 회의록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p> <p>※조항변경(관련된 조항으로 이동)</p>	<p>심의안 대로</p>
		<p>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p>	<p>심의안 대로</p>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로 한다.</p> <p>※개정안 제30조 1항을 법적 다름시 기본권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하여 ‘공명선거 서약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제출케 하고, 입후보자가 사회소송등을 하지 않는 것을 서류로 제출케 하기위하여 제17조 등록서류 항목에 게재.</p>	
<p>제19조 (후보자 홍보)</p> <p>1. 자격심사 완료 후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20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p>	<p>제19조 (후보자 홍보)</p> <p>1. 자격심사 완료 후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1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p>		개정안대로
<p>2.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개최 한다.</p>	<p>2.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별(3구도)로 3회 개최 한다.</p>	<p>2.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별(3구도)로 각 1회씩 개최 한다.</p> <p>※선관위 개정취지에 알맞는 문구로 수정</p>	심의안대로
<p>제20조 (입후보자 발전기금 및 등록금)</p> <p>1. 총회임원</p> <p>1)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은 70,000,000원으로 하며, 장로부총회장은 40,000,000원으로</p>	<p>제20조 (입후보자 발전기금 및 등록금)</p> <p>1. 총회임원</p> <p>1)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은 70,000,000원으로 하며, 장로부총회장은 50,000,000원으로</p>	<p>※타후보의 금액 변동이 없었기에 전체적 공정성을 유지하기위하여 현행대로</p>	현행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한다.	한다.		
	<p>5. 재판국원과 총회에서 선출(총회 현장 접수 포함)된 선거관리위원은 각2,000,000원으로 하고, 총회 현장에서 등록 접수된 자도 금2,000,000원을 등록접수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6. 총회 총무는 30,000,000원으로 한다.</p>	<p>(삭제)</p> <p>※공명한 사람을 선출하자는 총회 결의정신과 다르게 등록금을 내고 선출됨으로 부정선거를 묵시적으로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김</p>	심의안대로
제5장 선거 방법 제22조 (선거방법): <u>총회임원은 후보자가 3인 이상 일 때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전총대들의 결선투표로 선출하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단, 정임원은 현(現) 부임원을 추대한다.</u>	제5장 선거 방법 제22조 (선거방법) 1.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후보자가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서 선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다득점자 2명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로 한다. 단, 총회 현(現) 부임원을 정 임원으로 추대한다.	제5장 선거 방법 제22조 (선거방법) 1.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 단, 총회 현(現) 부임원을 정 임원으로 추대한다. ※과거 직선제안을 원용함. 1, 2차 투표를 할 시 또다른 불법선거가 생길 수 있음	심의안대로
	2.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후보자가 3인 이상 일 때는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해당 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단, 재판국장이 경선일 경우에는 재판국원 선거 후 실시한다.		개정안대로
제23조 (총회임원 선거 시행방법) 1. 선거준비: 총회개회 하루 전 위원회 주관으로 <u>제비뽑기와 결선투표를 준비한다.</u> 1) 제비뽑기를 위해 후보자 수만큼 각기 다른 색의 구슬과 구슬주머니를 준비한다. 2) 직접선거를 위해 기표소, 기표용지 및 기표도구, 투표함을 준비한다. 3)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선	제23조 (총회임원 선거 시행방법) 1. 선거준비: 총회개회 하루 전 위원회 주관으로 <u>투표를 준비한다.</u> 1) 직접선거를 위해 기표소, 기표용지 및 기표도구, 투표함을 준비한다. 2)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선거도구 일체를 봉인하여 보관한	제23조 (총회임원 선거 시행방법) 1. 선거준비: 총회개회 하루 전 위원회 주관으로 투표를 준비한다. 1) 직접선거를 위해 기표소, 기표용지 및 기표도구, 투표함을 준비한다. 2)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선거도구 일체를 봉인하여	심의안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거도구 일체를 봉인하여 보관한다.</p> <p>2. 선거시행</p> <p>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 색 두 개를 발표한다.</p> <p>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p> <p>3) 당선자 확정: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4)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p> <p>5)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순으로 진행한다.</p> <p>6)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p>	<p>다.</p> <p>2. 선거시행</p> <p>1)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삭제)</p> <p>(삭제)</p> <p>2)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p> <p>3) 총회임원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순으로 진행한다.</p> <p>4)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p>	<p>보관한다.</p> <p>2. 선거시행</p> <p>1)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p> <p>2)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p> <p>3) 총회임원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순으로 진행한다.</p> <p>4)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직선제투표이기에 결선투표가 별도 필요없음</p>	
<p>제24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 시행방법)</p> <p>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선거는 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p>	<p>제24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 총무, 선거 시행방법)</p> <p>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선거는</p>	<p>제24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 총무, 선거 시행방법)</p> <p>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p>	<p>심의안대로</p>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p> <p>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 색 두 개를 발표한다.</p> <p>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p> <p>3) 당선자 확정: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4)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p> <p>5)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p>	<p>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에 준하여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총회임원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되어 조항을 분리시킴</p> <p>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 색 두 개를 발표한다.</p> <p>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p> <p>3) 당선자 확정: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4)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p> <p>5)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p>	
	<p>2. 재판국원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 2항 14)호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은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항 3)호에 의하고, 총회 총무는 총회 규칙 제3장 제12조(총무) 2항 1)호에 의하여 각 시행한다.</p>	<p>2. 재판국원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 2항 14)호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은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항 3)호에 의하고, 총회 총무는 총회 규칙 제3장 제12조(총무) 2항 1)호에 의하여 각 시행하되 직선제로 선출한다.</p>	심의안대로
제25조 (등록이의신청 및 취	제25조 (등록이의신청 및 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소 등에 대한 조치)</p> <p>4. 9월 이후에 단일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은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단, 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2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p>	<p>소 등에 대한 조치)</p> <p>4. <u>당회기 년도 9월1일 이후에</u> 단일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은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단, 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2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p>		대로
<p>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p> <p>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p> <p>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p>	<p>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p> <p>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p> <p>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u>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총무</u>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p>	<p>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p> <p>제26조 (<u>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u>)</p> <p>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p>	심의안 대로
<p>4. 모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아선 안된다.</p> <p>5. 모든 입후보자는 노회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회조직 광고는 할 수 있다. 단, 입후보 후 총회 기관지에 5단 광고 4</p>	<p>4. 모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아선 <u>안되고, 선거기간 이후 교인 동원 및 문자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위반시 자동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각 단체의 정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허락 후 가능하다.</u></p> <p>5. 모든 입후보자는 노회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u>노회조직 광고는 허용하되 추천받은 자의</u></p>	<p>4. <u>모든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교인 동원 및 문자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회조직 광고는 허용하되 추천 받은 자의 사진과 소속 교회만 알리고, 경력사항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u></p> <p>5. <u>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u></p>	심의안 대로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p>	<p>사진과 소속교회만 알리고, 경력사항 광고는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접수 등록한 일로부터 총회 기관지에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 까지 게재할 수 있다.</p> <p>6. 후보자 본인 명의의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를 이용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되,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는 해서는 아니 되며, 총회 첫날(개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고, 주일날은 전면금지한다.</p> <p>7. 경쟁자가 있는 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선거일까지 교단내의 예배나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p>	<p>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전까지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아선 안 된다. 단,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순서를 맡을 수 있다.</p> <p>6.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p> <p>7.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를 이용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총회 첫날(개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날은 전면 금지한다. ※개정안 4-7항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을 두어 재정리</p>	
<p>6.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써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p>	<p>8.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써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p>		<p>개정안대로</p>
<p>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p> <p>5. 정기노회에서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임원후보를</p>		<p>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p> <p>5. 노회에서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임</p>	<p>심의안대로</p>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6.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 추천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추천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에서는 향후 4년간 공직자를 배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원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7. 본 규정 제14조, 제17조 5와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된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개정안 제31조를 별개로 두기보단,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에 항을 만들어 삽입</p>	<p>심의안대로</p>
	<p>제30조(선거소송과 관련한 불제소 등 합의서 제출의무) 1. 모든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준수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법에 고소, 고발, 제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불제소등 합의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불제소등 합의서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각서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불제소등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라는 서면을 법무법인공증인사무실(법원에서 일자확정 포함)에서 사</p>	<p>제17조(등록서류)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로 한다. ※개정안 제30조 1항을 법적 다틈시 기본권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불리해지지 않거위</p>	<p>심의안대로</p>

현행	개정안	심의안	비고
	<p>서증서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총무후보자는 2부를 작성하여 총회 임원회와 선관위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하여 '공명선거 서약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제출케 하고, 입후보자가 사회소송등을 하지 않는 것을 서류로 제출케 하기위하여 제17조 등록서류 항목에 게재.</p> <p>제17조 9항으로 이동</p>	
	<p>제31조(이의 신청에 따른 국가법에 고소 등에 관한 제재) 본 규정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 제한) 제5항에 의거 교단 법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직접 국가법에 고소, 고발 등을 제출하거나, 총회를 상대로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포함)로 제소한 자는 본 규정 제28조(후보 등록 취소규정) 제6항의 제재를 받는다.</p>	<p>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p> <p>7. 본 규정 제14조 5항, 제17조 9항과 관련하여 <u>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제소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u> 관련된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은 즉시 상실된다</p> <p>심의안대로 수정하여 제28조 제7항으로 이동</p>	심의안대로
	<p style="text-align: right;">개정 약사</p> <p>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p>		개정안대로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규칙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규칙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규칙 개정 청원의 건
 2. 헌법개정안과 법을 잠재한 특별결의의 건
 3. 회의규정 개정 청원의 건
 4. 총회디지털규정집, 관리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건
 5. 규칙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의 건
 6. 재정청원
- ※ 세부내용 : 별첨 참조. 끝.

2018년 9월

규 칙 부
부 장 신현철
서 기 박창식

별첨 1. 규칙개정 청원의 건

- 1) 총회 결의에 의하면 총대자격으로 조직교회 위임목사와 시무장로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규칙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총회법에 따라 흠결이 있는 자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 총회를 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2) 7개 부서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 원 취지에 혼동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3) 재판국장 및 7개 부서 상비부장의 경우에 총대경력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회선거규정에 의하면 기타 총회산하기구의 기관장의 경우에도 총대경력 5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국의 기능이 총대경력과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7회 이상은 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5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4)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의 긴급사안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총회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각 상비부장이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총회의 중대한 일에 대하여 상비부와의 협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실행위원회와 상비부간의 마찰을 불러오며, 상비부를 무력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실행위원회의 회원으로 각 상비부장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 5) 총신대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교단 직할 신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관과 법인이사의 변경에 관해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 6) 이증직, 점임에 관하여 총회결의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으므로 해묵은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규칙에 이증직과 점임 금지에 관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이를 인한 문제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이전의 총회결의들을 종합하여 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1장 제3조(조직)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한다.	제1장 제3조(조직)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하며, 총회총대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이어야 하고,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제3장 제9조, 2. 7)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 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제3장 제9조, 2. 7)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 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제3장 제9조 2. 13)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 개선하고, 총대 경력 7회 이상으로 하며,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	제3장 제9조 2. 13)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 개선하고, 총대 경력 5회 이상으로 하며,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p>다.</p>	
<p>제3장 제11조 1. 총회실행위원회 1)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장 제11조 1. 총회실행위원회 1)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상비부장, 총회소속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교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으로 구성한다.</p>
<p>제4장 제13조 1.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은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21 당회 이상 노회 1명)</p>	<p>제4장 제13조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총신신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하되법인이사는운영이사에서선임해야하며법인정관 및법인이사의변경은총회의인준을받아야한다.(운영이사는 21 당회 이상 노회 1명)</p>
<p>제33회 총회결의 목사로관공리 될 시는 당회장 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다</p> <p>제35회 총회결의</p> <p>제37회 총회결의 목사로써관공리와 국회위원에 전직케 되는 교역자에 대한 건은 안수목적에 위반되는 일이니 맞당히 목사성직을 사직할 것이요, 본인이 사직치 아니할 때에는 노회로 하여금 사직케 함이 가하오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목사는 시무사면함이 가하오며</p> <p>제38회 총회 결의 관공리국회의원급 사회학교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는 목사직을 사직하고 나가게 하여 달라는 건은 정치 제15장 10조에 의하여 교회계통의 학교와 사회사업을 제외하고는 목사직을사직케 함이 가한 줄 아오며</p> <p>제54회 총회결의 38총회결의<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것>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p> <p>제98회 총회결의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p> <p>제93회 총회결의 담임목사의이중직은 금하나 총신과 지방신학교 석좌교수 및 강의전담교수와 총회산하 비정규직은</p>	<p>제 9 장 이중직 및 겸임 금지</p> <p>제 30 조 (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p> <p>제 31 조 (이중직 예외사항)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직 금지 규정에 예외로 한다.</p> <p>1.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교수 혹은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p> <p>2.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p>

<p>할 수 있으며</p> <p>제87회 총회결의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을 겸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p> <p>제94회 총회결의 총회 특별부서 2중직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하기로 가결하다</p> <p>제44회 총회결의 총회신학교 교수가 동교 이사직을 겸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은 겸임치 않도록 함이 가한줄 아오며</p> <p>제84회 총회결의 총회 공기관 근무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p> <p>제93회 총회결의 기독교신문 사장, 주필은 총대를 겸직할 수 없고, 향후에도 언론과 총대는 겸직하지 않기로 가결하다</p> <p>제90회 총회결의 총회법인이사의 이중직금지 및 이사의 책임부담금</p>	<p>3.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p> <p>4. 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장.</p> <p>5.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p> <p>제 32 조 (겸임 금지)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2.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총신대학교 또는 지방신학교 전임교원은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가 될 수 없다. 단 본 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4.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교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5. 일인이 총신대학교의 이사(법인이사, 운영이사 포함)와 기독교신문사의 이사는 겸하지 못한다. <p>제 33 조 (겸직 위반)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소해야한다.</p>
--	---



납부에 대한 현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제96회 총회결의 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 기독교신문 이사는 이 중직 금하기로 가결하다	
--	--

별첨 2. 헌법개정안과 법을 잠제한 특별결의의 건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 10)에 의하면 “고시부는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강도사 자격 고시를 행하며 고시할 날짜는 매년 6월중으로 하되 단, 군종장교 후보생은 2월중으로 하며 제98회 총회가 결의한(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총회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합격 후 봄 노회시 군목으로 안수 하되 축도권은입관시 부여하기로 하다) 군목안수제도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의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자로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총회 규칙은 헌법을 잠재하고 시행되는 특별규정이며, 사실상 위헌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헌법에 맞도록 수정되거나, 제98회 총회의 결의와 현행 총회 규칙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총회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과, 헌법개정절차가 완료되기 까지,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를 잠재하고, 현행 규칙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결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제4장 제2조의 “단,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별첨 3. 회의규정개정청원의 건

총회가 채용하여 시행 중인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정”는 오랜 전에 사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총회를 비롯한 각 치리회의 회의 절차에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므로 이에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정”을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회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게 하고,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4. 총회디지털규정집, 관리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건

총회 산하에는 수많은 부서, 위원회, 산하기관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정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교단의 법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디지털화 해서 교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디지털규정집의 제작을 허락 받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완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총회에서 디지털 규정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의 관리를 총회 전산관리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게 하고, 규정내용에 관해서는 규칙부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규칙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의 건

기간 : 2019년 6월 중.

목적 : 총회가 가장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총대들의 총회 규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 규칙이 총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규칙에 대한 세미나에 겸하여 공청회를 함으로 총회 규칙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므로 총회의 현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별첨 6. 재정청원

1. 재정청원 :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원)
2. 청원사유
 - 1) 회의비
 - 2) 디지털규정집 관리비
 - 3) 소위원회 연구비
 - 4) 규칙세미나